#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95

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김용만・이정문・조승래

이인영 · 염태영 · 이훈기

최민희 • 강준현 • 이강일

김용민 · 이기헌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·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·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,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통령령·부령·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 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,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 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). 법률 제 호

###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 후단 중 "통보하여야"를 "통보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한다"를 "하며, 그 조치결과(요청받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)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)	제59조(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)
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	①
청구를 심리·재결할 때에 처	
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	
명령 등(대통령령·총리령·부	
령・훈령・예규・고시・조례・	
규칙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	
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	
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	
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	
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	
그 명령 등의 개정・폐지 등	
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	
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	
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	
실을 법제처장에게 <u>통보하여야</u>	통보하고, 국회 소관 상임
한다.	위원회에 보고하여야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	②
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	
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<u>한다</u> .	<u>하며, 그</u>
	조치 결과(요청받은 시정조치
	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
	사유를 포함한다)를 법제처장

<u>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</u> <u>각 제출하여야 한다</u>.